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0.(화) 12:00 / 배포 2026. 11. 10.(화) 08:30
<11.11.(수)조간>
< 11.10.(화)석간 >

네이버파이낸셜-두나무 기업결합 건 심의 절차 개시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'공정위') 사무처는 **네이버파이낸셜** 주식회사(이하 '네이버파이낸셜')와 **두나무** 주식회사(이하 '두나무') 간 포괄적 주식교환[1]을 통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이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,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 시장에서 **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**가 있다고 판단하고, **시정방안 제출 절차**[2]를 거친 후 위원회에 **심사보고서**를 **제출**하였다. 이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**심의 절차**가 **개시**되었고, 11월 6일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다.

1) 포괄적 주식교환(상법 제360조의2)이란,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대신 B회사 주주에게는 A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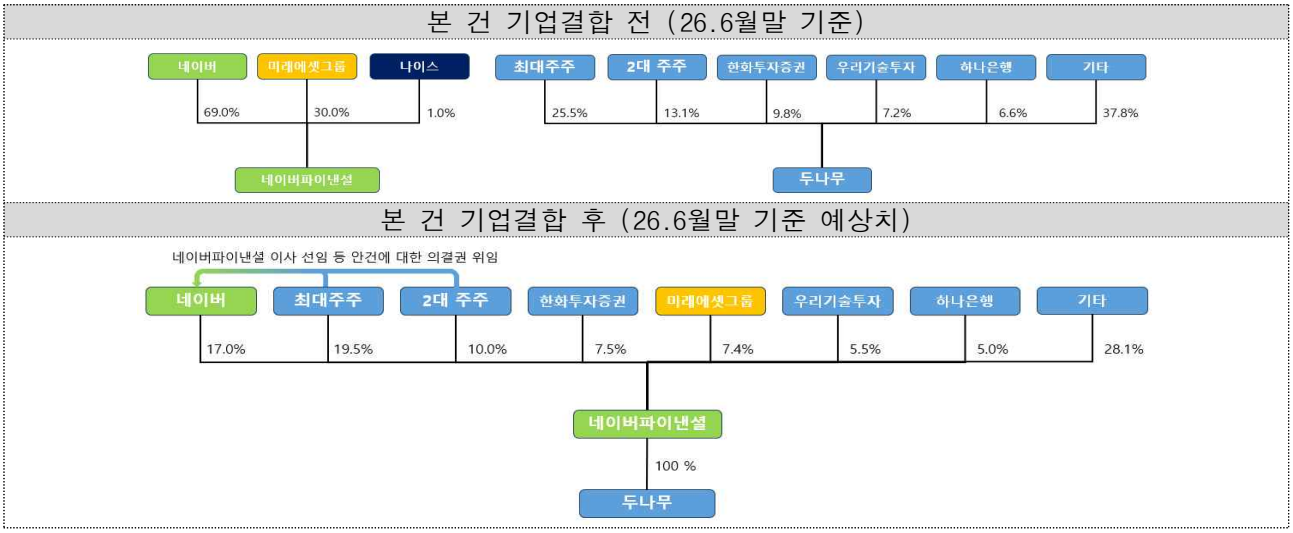
2) 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하고, 심사관이 이를 평가·수정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결합회사가 동의하는 경우, 심의 개최 및 의결서 작성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

※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.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

<기업결합 개요>

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들에게는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.54주를 지급하게 됨으로써, 본 건 기업결합 후 **네이버파이낸셜**은 **두나무**의 **완전모회사**가 되고,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.

<표 1> 본 건 기업결합 전후 결합 당사회사 지분 변화



<관련시장 획정>

심사관은 본 건 결합의 영향을 받는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**총 10개의 관련시장**을 획정하였다. 이는 ①국내 **온라인 간편결제** 시장, ②국내 **디지털 자산거래소** 시장을 포함하여, ③국내 **온라인 검색포털** 시장, ④국내 **온라인 광고** 시장, ⑤국내 **온라인 쇼핑** 시장, ⑥국내 **금융 마이데이터** 시장, ⑦국내 **비상장주식 중개거래** 시장, ⑧국내 **상장주식 투자 플랫폼** 시장, ⑨국내 **온라인 중고거래**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에 더해 향후 형성될 ⑩**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** 시장을 추가로 획정하였다.

<표 2> 본 건 기업결합 관련시장 목록

연번	관련시장	사업수행 여부	
		기업집단「네이버」	기업집단「두나무」
1	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	0	X
2	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	X	0
3	국내 온라인 검색포털 시장	0	X
4	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	0	X
5	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	0	X
6	국내 금융 마이데이터 시장	0	X
7	국내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시장	0	X
8	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시장	0	0
9	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	0	0
10	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	(예정)	

<결합유형 및 안전지대 여부 판단>

심사관은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총 **12개의 수평**[1]**·수직**[2]**·혼합**[3] **결합**이 발생한다고 보았다.

1) 수평결합: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
2) 수직결합: 생산과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
3) 혼합결합: 수평결합 또는 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

우선, **기존 사업부문과 관련**하여 **6개의 혼합결합**과 **2개의 수평결합**이 발생한다고 보았다. 여기에서 6개의 혼합결합은 **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**와 ①국내 **온라인 간편결제** 시장, ②국내 **온라인 검색포털** 시장, ③국내 **온라인 광고** 시장, ④국내 **온라인 쇼핑** 시장, ⑤국내 **금융 마이데이터** 시장, ⑥국내 **비상장주식 중개거래** 시장 간의 각 혼합결합을 말하며, 2개의 수평결합은 ⑦국내 **상장주식 투자 플랫폼** 시장, ⑧국내 **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** 시장에서의 각 수평결합을 말한다. 이 중 2개의 수평결합은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.

한편, 피심인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진 **원화 스테이블코인**과 **관련**하여서는 **2개의 수직결합**과 **2개의 혼합결합**이 발생한다고 보았다. 여기에서 2개의 수직결합은 ⑨국내 **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** 시장과 국내 **디지털자산거래소** 시장 간, ⑩국내 **디지털자산거래소** 시장과 국내 **온라인 간편결제** 시장 간 수직결합을 말하며, 나머지 2개의 혼합결합은 ⑪국내 **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** 시장과 국내 **온라인 간편결제** 시장 간, ⑫국내 **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** 시장과 국내 **온라인 쇼핑 시장** 간 혼합결합을 의미한다.

<표 3> 본 건 기업결합 결합유형 목록

구분	연번	결합유형	관련 시장		안전지대
기존사업 관련	1	혼합결합	국내 온라인 간편결제(N)	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(D)	X
	2		국내 온라인 검색포털(N)		
	3		국내 온라인 광고(N)		
	4		국내 온라인 쇼핑(N)		
	5		국내 금융 마이데이터(N)		
	6		국내 비상장주식 중개거래(N)		
	7	수평결합	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(N+D)		0
	8		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(N+D)		
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	9	수직결합	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	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(D)	X
	10		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(D)	국내 온라인 간편결제(N)	
	11	혼합결합	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	국내 온라인 간편결제(N)	
	12		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	국내 온라인 쇼핑(N)	

<심사 경과>

심사관은 2025. 11. 28.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**신고**를 **접수**한 후 복잡하고 광범위한 관련 상품·용역시장 현황을 분석하고, **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**을 폭넓게 수렴하였다.

이를 바탕으로 심사관은 본 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,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등 앞서 살펴본 **다수의 관련시장**에서 1위 **사업자 간 혼합·수직결합**이 이루어짐으로써, 관련시장에서의 **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**고 판단하였다. 이후 심사관은 「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」 제3조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위와 같은 잠정적인 판단 결과를 통보하였다.

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본 건 기업결합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**시정방안 초안**을 마련하여 심사관에게 제출하였고, 이후 심사관 측 **전문가 의견조회** 결과 및 심사관의 **수정·보완 요구**를 반영하여 **수정한 최종안**을 **제출**하였다.

<심사관 조치 의견>

심사관은 **본 건 기업결합**이 관련시장에서 **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**하므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'법')」 제9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, 피심인들이 제출한 최종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**시정조치 의견**을 제시하였다. 시정조치 의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본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**작위·부작위 의무**들로 구성되어 있다.

※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, 위원회는 그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(법 제14조제2항)

<향후 일정>

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네이버파이낸셜-두나무 기업결합 관련 전원회의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며,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독립된 위원들 간 합의를 통해 본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	책임자	과 장	김혜선 (044-200-5075)
		담당자	사무관	김범규 (044-200-5076)
			사무관	남용주 (044-200-5076)
			사무관	한호영 (044-200-507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